## 사후관리

## ○ 사후관리 절차

- 1. 인증책임자는 의뢰자와 인증제품이 규정된 인증요건에 지속적으로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분야별 및 모델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요건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2. 인증책임자는 의뢰자의 인증표시제품이 인증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자자가 서면으로 만료시점을 포함한 인증제품의 생산중단 보고를 한 경우,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를 유예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의뢰자는 생산중단 보고 만료시점 전에 생산개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4. 현장평가와 제품평가의 사후관리 주기는 최소한 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의뢰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증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조정할 수 있으나, 그 다음 사후관리 주기는 처음설정된 기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.
- 5. 인증스킴 형식별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형식별	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	권한
Type 1a	사후관리 없음	-
Type 1b	사후관리 없음	-
Type 3	생산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, 공장에서 생산중 인 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제품평가 실시	인증기관
※ 사후관리의 경우 시료의 크기를 n = 1로 한다.		

6. 인증책임자는 사후관리 결과,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의뢰자에게 「인증의 만료, 축소, 정지 또는 취소」절차서 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.

## 1) 개선경고

- 「인증의 만료, 축소, 정지 또는 취소」 절차서 4.1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 치증빙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경미한 부적합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제품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한 경우에 해제한다.

## 2) 표시정지

- 「인증의 만료, 축소, 정지 또는 취소」 절차서 4.2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 치증빙자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대한 부적합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 필요 시 재현장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제품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한 경우에 해제한다.
- 인증책임자는 의뢰자가 제품, 제조공정에 대한 수정사항과 같이 KS Q ISO/IEC 17065의 7.10.3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든 변경사항 또는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- 인증책임자는 3.7에 의해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며, 인증업체로 하여금 KOTITI에 별도의 통보 없이 변경사항이 적용된 인증제품을 방출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